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3. 10. 24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3년 10월 10일

나. 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3년 10월 19일

라. 상정일자: 제24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3. 10. 23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복지국장 강현숙)

가. 제안이유

-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공영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.
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(2023. 3. 29.)으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~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
- 지원대상자에 대해 규정함(안 제4조)
-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~제7조)
- 지원결과 관리, 비용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~제9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경진)

○ 본 조례안은

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(2023. 3. 29.)으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공영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제명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」 이고 9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,
-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,
-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로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기반 조성 및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자로 무연고 사망자,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·기피한 사망자, 저소득층 사망자, 아동학대로 사망한 자, 고독사로 사망한 자 등으로 명시하였고,
- 안 제5조에서는 지원방법으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, 예외적으로 현금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, 화장문화 장례를 위해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,
- 안 제6조에서는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공영장례 지원 시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고,
- 안 제7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8조에서는 연고자 및 신청인이 지원 목적에 맞게 비용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,
- 안 제9조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
○ 검토 결과

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이 2023.3.29.자로 일부개정(시행 2023.9.29.)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여 무연고 시신에 대해 장례 의식을 수행하도록 하였고,
- 더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,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·기피한 사망자 등에게도 공영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인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위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체제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40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3. 10. 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가.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공영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.
- 나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(2023. 3. 29.)으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지원대상자에 대해 규정함(안 제4조)
- 라.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~제7조)
- 마. 지원결과 관리, 비용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~제9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: 2024년 예산 반영 예정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)
- 다. 협의사항
 - 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 - 2)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
3) 인권영향평가 결과: 인권 침해 가능성 없음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: 별도의 개선사항 없음

라. 입법예고(2023.8.24. ~ 9.13./ 20일 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공영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공영장례”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제6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장례 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연고자”란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.
3. “저소득층”이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, 「긴급복지지원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.
4. “유품정리”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사망으로 남겨진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대상자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 등을

지원할 수 있다.

1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내에서 사망한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·기피한 사망자. 다만,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제1항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에서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.
2. 사망 시, 구에 주소를 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, 「긴급복지지원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
3.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람으로서 연고자가 구속,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
4.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로 사망한 경우
5.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5조(지원방법) 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사유로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.

제6조(지원내용)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 및 유품정리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, 범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) ①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대상자는

구청장이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.

② 제4조제5호의 지원대상자는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.

제8조(지원결과 관리)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연고자 및 신청인이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.

제9조(비용환수)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연고자 및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영장래 지원 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내역

- 유품정리비 지원: 10,000천원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의
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유품정리비 지원 소요예산: 10,000천원(3억원 미만)
- 필요시 지속사업 여부 검토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복지국 생활보장과 김민음
연 락 처	02-2670-3381